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기술보호 범위를 수탁·위탁거래 계약 체결 이전 단계까지 확대함(안 제25조제2항).
- 법원으로부터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행정조사 기록 송부를 의무화 함(안 제40조제5항 신설 등).
-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지정전문가 사실조사 제도를 도입하고, 법원이 영업비밀 등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0조의6, 제40조의7, 제40조의8, 제40조의9 및 제40조의10 신설).
-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거나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자료보전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(안 제40조의12 신설).
-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관련 사실의 증명이나 손해액 관련 사실의 자료검증에 필요한 경우, 당사자가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0조의13 신설).

II. 검토의견

1. 「변호사법」 개정에 따라 도입되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사항

- 안 제40조의7은 지정전문가의 조사를 받는 당사자가 법률의견을 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 간에 상호 주고 받은 비공개 자료 또는 상대방 당사자나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이 소송을 예견하고 그 소송의 준비나 수행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자료(“법률자문서등”)를 법원이 지정전문가의 조사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여, 지정전문가의 조사시 변호사 등 대리인의 비밀유지권을 규정하고 있음.
- 한편,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2025. 12. 12.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신설하는 「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을 의결¹⁾하였는바, 개정안의 문언을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일반법에 관한 「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에 부합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, 이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법무부와 협의하여 제시한 수정의견²⁾은 다음과 같음.

1) 「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」(2025. 12. 12.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의결)

제26조의2(비밀유지권 등) ①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려는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의뢰인등”이라 한다)는 그 사이에서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조력을 제공하거나 받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비밀인 의사교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변호사와 의뢰인은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, 수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(전자적 형태로 작성·관리되는 것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.

1. 의뢰인등의 승낙이 있는 경우

2. 변호사가 의뢰인등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의뢰인등의 증거인멸, 범인은닉, 장물취득 등 범죄 기타 위법행위에 관여하거나, 의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나 자료를 위법행위에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

3. 변호사와 의뢰인등 사이에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변호사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
4.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
개 정 안	중소벤처기업부 수정의견
제40조의6(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)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(<u>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법률자문서등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자문서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제외한다</u>)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. (생략) 제40조의7(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) ① 법원은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가 법률의견을 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제공할 목적으로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 간에 상호 주고 받은 비공개 자료 또는 상대방 당사자나 그의 변호사 등 대리인이 소송을 예견하고, 그 소송의 준비나 수행을 목적으로 작성한 비공개 자료(이하 “<u>법률자문서등</u>”이라 한다)를 그 조사의 대상 및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	제40조의6(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) ⑪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대방 당사자는 지정전문가가 요청하는 자료(<u>제40조의7제1항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 및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법원이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자료는 제외한다</u>)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. (개정안과 같음) 제40조의7(조사대상 및 범위의 제한) ① 법원은 제40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를 결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「변호사법」 제26조의2에 따른 의사교환 내용 또는 서류나 자료(이하 “<u>의사교환등</u>”이라고 한다)를 그 조사의 범위 및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.

2) 이외에도 안 제40조의7 중 “법률자문서등”을 “의사교환등”으로 수정함.

2. 그 외의 사항

- 그 밖의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, ① 새롭게 도입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의 주체인 지정전문가에 대한 기피 등에 관하여 안 제40조의6제4항과 제40조의8이 동시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조문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, ② 안 제40조의18에 따른 보전명령 대상 자료의 관리자가 제3자인 경우를 고려하여³⁾⁴⁾ 비용 납입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며, ③ 안 제40조의13에 따른 진술녹취 제도가 당사자 간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, 「민사소송법」의 증인신문 규정 중 준용되기에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구인(拘引) 명령에 관한 같은 법 제312조⁵⁾를 준용 대상 조항을 열거하고 있는 안 제40조의13제12항⁶⁾에서 삭제하고, ④ 그 외 법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) 보전명령 대상 자료를 상대방 당사자(피고)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의 비용 처리 문제는, 안 제40조의12제4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 신청자에 대한 담보제공 명령으로 해결하고 있음.

4) 안 제40조의12(자료보전명령 및 효과)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보전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점유·관리·보관하는 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자료보전명령을 신청한 당사자(이하 이 조에서 “신청당사자”라 한다)에게 담보액과 담보제공의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, 그 당사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. 이 경우 본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 제122조, 제123조,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.

5) 「민사소송법」 제312조(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의 구인) ①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을 구인(拘引)하도록 명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구인에는 형사소송법의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「형사소송법」 제71조(구인의 효력)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에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.

제71조의2(구인 후의 유치)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교도소·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유치기간은 인치한 때부터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.

6) 안 제40조의13(당사자에 의한 신문 등) ⑫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아닌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「민사소송법」 제303조부터 제309조까지, 제311조, **제312조**, 제314조, 제315조, 제321조부터 제324조까지, 제327조제1항, 제327조의2 및 제328조를, 당사자인 진술인을 제1항에 따라 신문하는 경우에는 「민사소송법」 제309조, 제321조, 제322조, 제327조제1항, 제327조의2 및 제370조를 준용한다.

Ⅲ. 관계 기관 의견

- 법원행정처는 안 제40조의9에 따라 도입되는 진술녹취 제도와 관련하여 제도 도입 자체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, 기본적으로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진술에 관한 것이므로 전형적인 소송법에 관한 내용이라는 점 및 해당 제도가 일부 개별법에만 포함되어 있다면 적용 범위에 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반법인 「민사소송법」⁷⁾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, 디스커버리 제도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 수립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시행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.

(전문위원 박 혜 진)

7) 2025. 12. 현재 관련 개정안으로 「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3202호)」가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.